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3

대 전 고 등 법 원

청 주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청주)2016누1078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redacted]군수
	2. [redacted]군수
	3. [redacted]시장
	4. [redacted]군수
	5. [redacted]시장
	6. [redacted]군수
제 1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6구합10478 판결
변 론 종 결	2017. 3. 15.
판 결 선 고	2017. 4.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3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표 '대상물건'란 괄호 안의 "이 사건 입목"을 "이 사건 임산물"로 고치고, 제4면 제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한편 원고와 대한민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을 기초로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다만 매각입목의 표지에 관한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28조가 2010. 7. 2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3호로 개정되어 별지 제19호 서식이 변경되었음에도 위 개정 전 서식을 사용한 것이 일부 있으나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조항과 표현을 개정된 서식에 의한 것으로만 표시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임산물의 인도)
① 대한민국은 대금납입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임산물의 인도를 통보하고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임산물을 인도해야 한다.
② 임산물의 인도는 벌채구역위치도, 벌채구역도 및 매목재적조서의 사본을 첨부한 임산물 인도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임산물의 반출)
① 원고는 반출기간 내에 매수한 임산물을 국유림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만일, 벌채구역 안에 미벌채목이 있을 경우에는 반출기간 내 입목의 생장기간에 해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3

하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생장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원고가 별도로 납부하기로 한다.

제6조(계약해제)

소관 관서의 장은 원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보증금과 이미 납부된 매각대금 및 매각대상 임산물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4. 인도받은 임산물 외의 임산물을 채취 · 반출 · 처분하거나 임산물을 인도받기 전에 임산물을 채취 · 반출 · 처분한 경우(종업원의 행위를 포함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6조 제11호는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입목'이란 지상에 식재되어 생육하고 있는 과수, 임목, 죽목을 말하므로, 집단적으로 식재되어 밀집한 숲을 이룬 수목이 토지와 독립하여 계약의 목적물로 되었다면 그 수목은 지방세법이 정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1983. 10. 11. 선고82누51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계약의 목적물이 '입목'인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3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내용과 갑 제2, 3, 10호증, 을다 제1 내지 6호증, 을바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목적물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입목이 아니라 원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1) 국유림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은 국유임산물 중 입목의 매각과 원목의 매각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계약서와 인도증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위 별지 제19호 서식 국유임산물 매매계약서 제2항은 목적물의 인도는 벌채구역도 등이 첨부된 인도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는 입목의 매각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에 관하여 벌채나 원목생산 등과 관련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반면, 원목의 매각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인도증에 추가서류로 임산물의 위치도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위 별지 제19호 서식 국유임산물 매매계약서 제2항은 매도인인 대한민국이 국유림을 벌채하여 그 산물인 원목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벌채나 원목생산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춘 매수인에 대해서는 위 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3

도증의 교부로써 소유자의 벌채 권한을 위임함과 아울러 위 인도의무 이행에 갈음하고(국유림법령상 입목의 매각이 이에 해당한다), 그와 같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매수인에 대해서는 권한에 의하여 벌채 및 생산한 원목의 위치도가 포함된 인도증을 교부함으로써 위 인도의무 이행에 갈음하도록 약정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국유림법령상 원목의 매각이 이에 해당한다).

2) 원고는 벌채나 원목생산 등에 관한 자격을 요구한 입찰절차를 통해 이 사건 임산물을 매수하고, 인도증만을 교부받아 입목을 직접 벌채한 국유림법령상 입목의 매각에 의한 매수인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 국유림법령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각 계약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항 및 제4항에서 일반적인 입목의 매매와 달리 입목의 벌채 및 원목의 반출을 전제로 한 명시적인 약정 내용을 두고 있다.

위 약정 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관련 자격을 갖춘 매수인이 입목을 직접 벌채하여 원목을 반출하는 국유림법령상 입목의 매각에서든, 자격이 없는 매수인이 이미 벌채된 원목을 인도받아 반출하는 국유림법령상 원목의 매각에서든 매수인이 실제로 취득하는 목적물은 원목으로 동일하고, 다만 벌채의 주체가 권한을 위임받은 매수인인지, 아니면 본래의 권한자인 매도인인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과 인도증의 첨부서류가 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충주시장과 제천시장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6165 판결은 계약의 목적물이 입목임을 전제로 취득 당시 벌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입목의 벌채 및 원목의 반출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을 두어 원목을 목적물로 삼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어렵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3

3) 더구나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상 근주(根柱)는 매각 임산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고는 나무의 뿌리까지 반출할 권리를 갖지 못하고, 이를 어길 경우 매도인은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는바(국유림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및 이 사건 각 계약서 제6조 제4호 참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대한민국의 의사는 나무의 뿌리 및 밑둥을 제외한 일부를 매각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처럼 근주를 제외한 매각 대상을 가리켜 지상에 식재되어 생육하는 임목이라 할 수는 없다.

4) 한편 지방세법 제15조는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으로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계약 이후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신설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부과되는 취득세는 0원이 되는바, 이러한 현행 지방세 관계 법령은 이 사건 각 계약과 같이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 그 입목의 취득은 형식적인 것이므로 이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연한 법리를 재차 확인하는 취지로 파악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3

재판장 판사 신귀섭

판사 류희상

판사 장원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3

부과처분 목록

순번	피고	원처분일	재처분일	취득세 (가산세 포함, 원)	농특세 (가산세 포함, 원)
1	[redacted]군수	2015. 9. 25.	2016. 7. 1.	2,781,380	240,290
2	[redacted]군수	2015. 9. 1.	2016. 7. 1.	2,984,100	257,810
3	[redacted]군수	2015. 9. 7.	2016. 7. 25.	1,438,290	122,820
4	[redacted]군수	2015. 9. 7.	2016. 7. 25.	366,840	31,650
5	[redacted]시장	2015. 9. 7.	2016. 6. 10.	1,197,400	119,730
6	[redacted]시장	2015. 9. 8.	2016. 6. 10.	2,764,250	235,820
7	[redacted]군수	2015. 8. 25.	2016. 7. 1.	745,910	62,640
8	[redacted]시장	2015. 9. 10.	2016. 7. 8.	5,540,660	554,060
9	[redacted]시장	2015. 9. 10.	2016. 7. 8.	8,736,420	739,440
10	[redacted]군수	2015. 9. 15.	-	3,657,350	365,730